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일부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육과정심의회 역할, 조직에 의견수렴 기능, 특별위원회 규정을 보완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교육과정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①~③항)
 -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 다. 교육과정심의회 학생 참여를 위해 위원에 관한 사항에 학생을 보완함(안 제6조①항)
 -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관한 사항(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높은 학생)
- 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사·연구를”을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을”로 한다.

제2조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별위원회) ① 초·중등 학생 및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높은 학생, 당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위원회와”를 “소위원회,”로, “소위원회에는”을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u>조사·연구</u> 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	제1조(설치) ----- ----- ----- ----- ----- <u>조사·연구</u> <u>및 의견수렴</u> ----- -----.
제2조(심의회의 조직)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u>운영위원회</u> 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제2조(심의회의 조직) ----- ----- ----- <u>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u> ----- --.
<u><신 설></u>	제5조의2(특별위원회) ① <u>초·중등 학생 및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u> ② <u>특별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u> ③ <u>제1항의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u>

제6조(위원) ①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u>당해</u>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②·③ (생략) 제7조(위원장 등) ①각 교과별 <u>소위원회와</u> 각 학교별 <u>소위원회에</u>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 1인을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⑤ (생략)	<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6조(위원) ①----- ----- ----- <u>교육과정</u> <u>운영 방향에 관심이 높은 학생,</u> <u>당해</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 ①----- <u>소위원회,</u> ----- <u>소위원회와</u> <u>특별위원회에는</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3 - 7033